

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17·11·10 조례 제1354호

제1조(「이천시 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14조제1항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며, 제20조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19조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

제4조제3항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 한다.

제8조(「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중소기업청장”를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로 한다.

제9조(「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를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행정자치부령”을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표 중 “미래창조과학부”를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”로 하고, “국민안전처”를 “행정안전부 소방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